
2025년도 전국종합체육대회 변경 사항

2024. 12.



2 전국소년체육대회

1 신규 종목(종별) 신설 관련 안내

① 조건부 신설 종목 대상: 7종목 11종별

- 제15차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2024. 1. 23.), 제28차 이사회(2024. 2. 6.) 결과 아래 종목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종별) 신설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의결한 바 있음

⇒ 근대5종(12세이하부), 펜싱(12세이하부), 승마(12세이하부), 스쿼시(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산악(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e스포츠(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합기도(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 합기도는 26년도 적용 의결이나 마찬가지로 예산확보 조건 충족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종목	종목별 조건	공통 조건
근대5종, 펜싱, 승마, 스쿼시, 산악	·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10개 시도 이상 선수(팀) 구성	출전비 예산확보 (국고, 지방비)
e스포츠	· 경기인등록규정을 준용한 등록(선수 등) 체계 마련	
합기도	· 2025년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 개최 후 2026년 도입	

② 검토 결과

- 2025년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예산 동결
⇒ 2024년 3월 202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시 해당 종목들의 신규 유입을 감안하여 증액 신청했으나 미반영
- 기본방침: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후 채택 가능
⇒ 신규 종목(종별) 신설은 예산 확보 후 재검토 가능

2

세부종목 신설, 변경, 분리

① 세부종목 신설: 양궁 혼성단체

- 12세이하부(혼성단체종합), 15세이하부(혼성단체전)

⇒ 조건: 출전인원, 경기일수 증가 없이 신설

② 내용

- 해당 세부종목 신설은 출전인원, 경기일수 증가 없이 신설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혼성단체전 신설

⇒ 현행(출전인원, 경기일수, 예산) 경기운영 유지를 조건으로 신설하되, 신설이후 현행 운영사항이 변경될 경우 원상복귀 조건

3

경기규칙 등 변경

구분	현행	변경(안)	설명
근대3종	<참가요강> 근대3종 2. 종목 및 내용 · 레이저표적(5개×3회) ※ 50초 무제한 사격	<참가요강> 근대3종 2. 종목 및 내용 · 레이저표적(5개×4회) ※ 50초 무제한 사격	·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U17)는 레이저표적을 4회 실시 · 국제대회와 다른 방식으로 인해 선수에게 혼선과 경기력에 영향 발생 등
조정	<참가요강> 29. 조정 3. 참가자격: 2024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더블스컬 종목은 혼성팀 참가도 가함)	<참가요강> 29. 조정 3. 참가자격: 2024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더블스컬 종목은 선발팀 참가도 가함)	· 더블스컬 종목은 '해당 시도 선발전팀이 출전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나 남, 여 혼성 개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용어 정비
롤러	<참가요강> 27. 롤러 2. 종목 스프린트500m+D 스프린트1,000m 포인트(P)3,000m 제외+포인트(EP)10,000m 제외(E)10,000m 계주3,000m	<참가요강> 27. 롤러 2. 종목 스프린트500m+D 스프린트1,000m 포인트(P)3,000m 포인트(P)5,000m 제외(E)10,000m 계주3,000m	· 월드 스케이트(WSK) 스피드기술포럼의 2024년판 스피드경기규정 제50조 세계선수권대회의 공식 거리, 제60조 월드컵의 공식 거리 내 종전 제외+포인트10,000m가 포인트5,000m로 변경됨

4

전국소년체육대회 외국인 선수, 임원(지도자) 참가 변경

- ① **현행:** 종목별 경기인 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해 외국국적의 선수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 중, 선수는 외국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임원(지도자)은 불가
- ② **배경**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14개 종목 52명의 외국인선수 참가
 -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선수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완화하였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 단기로 선수를 영입하는 사례 발생
 - 선수만 가능하고 임원(지도자)은 불가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 ③ **변경 사항**
- 제도 개선 본연의 취지를 살려 외국인 참가를 허용하되 거주기간 조건을 두어 해외에서 단기로 영입하여 국내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외국인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
 - 선수의 경우 외국인은 종목별 경기인 등록이 된 자에 한해 참가가 가능, 선수와 동일하게 임원(지도자)도 참가가 가능하도록 변경 필요
 - 지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연맹이 발행하는 관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에 참가 허용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요강 3. 참가자격 가. 경기인등록규정상 등록된 임원(지도자) 선수에 한한다. 단, 임원(지도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요강 3. 참가자격 가. 경기인등록규정상 등록된 임원(지도자), 선수에 한한다. <u>단,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인 자에 한한다.</u> * <u>외국인 임원(지도자)의 경우 국제연맹이 발행하는 관련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에 참가 허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참가에 국내 거주 조건(1년) 제시 * 단기 해외체류(3개월 이내)는 거주기간에 포함

- ① **현행:**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격 “나” 항 학생선수 참가 자격
(단, 학생선수는 재학 중인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선수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클럽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 전국체육대회는 18세이하부 참가자격 1)항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요강 3. 참가자격

나.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등록된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같다.)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단, 학생선수는 재학 중인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선수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클럽*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② 배경

- 스포츠클럽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 정서상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는 지적 ⇨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에서는 운동부가 없어 활동을 하지 않고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음. 이 때 학교와 소속 클럽의 시도가 다를 경우 학교가 소재한 시도로만 대회에 참가해야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 증가

③ 변경 사항

- 해당 조항은 과거 학교 중심의 전문체육 육성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현재 전문체육은 스포츠클럽을 위주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도 다수 존재 ⇨ 학교에 운동부가 없거나 개인종목의 경우 전혀 지원이 없음에도 학교 소속 시도로만 대회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함
- 대회 취지 및 참가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회의 취지에 부합
- 이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을 선수 등록 기준(학교 또는 클럽)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

- 이적동의서 제출 시점이 기재되지 않아 행정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명시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참가자격	나. 대회에 참가하는 <u>지도자</u> 는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단, <u>학생</u> 선수는 재학 중인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선수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클럽* 소속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나. 대회에 참가하는 <u>선수, 지도자</u> 는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 <u>참가한다</u> .	
	3. 참가자격 (조항 신설)	3. 참가자격 <u>차. 이적 동의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등 처리는 참가신청 마감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참가신청 마감 및 이의신청 이후 이적 협조 사례 발생